

7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238號 1996. 12. 31

주 요 골 자

- 가. 시·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,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중에서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하는 개발부담금의 2분의 1을 시·도에 귀속하도록 함(영 제2조).
- 나. 개발부담금이 50퍼센트 감면되는 사업에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설치사업을 추가함(영 제5조).
- 다.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와 자동차경주장업·승마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하고,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함(영 별표 1).

개 정 이 유

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(1995. 12. 29, 법률 제5072호)에 의하여 시·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시·도에 배분하도록 하고,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및 감면대상사업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